

건설근로자 보유증명서 발급신청서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사업주 또는 발주자)	구분	[] 사업주 [] 발주자			
	상호 또는 기관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전화번호
신청사항	①사업장	[] 전체 사업장		[] 특정 사업장	
	②근로자	[] 전체 근로자		[] 특정 근로자	
	③직종	[] 전체 직종		[] 특정 직종 (직종 :)	
	④등급	[] 전체 등급		[] 특정 등급 (등급 :)	
	제출처		부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제1항 및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보유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귀중

⑤특정 사업장			⑥특정 근로자			
일련 번호	공사명	발주자	일련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종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⑤특정 사업장			⑥특정 근로자			
일련 번호	공사명	발주자	일련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종
11			11			
12			12			
13			13			
14			14			
15			15			
16			16			
17			17			
18			18			
19			19			
20			20			

첨부서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제3호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건설근로자 보유증명서 발급 동의서(전자적 방법으로 건설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 경우 보유증명서 발급에 동의하는 건설근로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2. 재직 확인서류(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자격득실확인서 등 건설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수수료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

유의사항

1. 사업주 또는 발주자가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인인감(사용인감을 포함합니다)을 찍어야 합니다.
2. 보유증명서의 기재사항은 건설근로자의 발급 동의를 받거나 고용관계가 확인된 경우에만 작성됩니다.
3. ①란의 사업장 범위는 전체 또는 특정 사업장을 선택(√)합니다. 미선택 시 전체 사업장 범위로 발급됩니다.
4. ①란의 특정 사업장을 선택할 시, ⑤란에 신청하려는 사업장의 정보를 적습니다.
5. ②란의 근로자 범위는 전체 또는 특정 근로자를 선택(√)합니다. 미선택 시 모든 건설근로자로 발급됩니다.
6. ②란의 특정 근로자를 선택할 시, ⑥란에 신청하려는 특정 근로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7. ③란의 직종 범위는 전체 또는 특정 직종을 선택(√)합니다. 특정 직종을 선택할 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8. ④란의 등급 범위는 전체 또는 특정 등급을 선택(√)합니다. 미선택 시 모든 등급의 건설근로자로 발급됩니다.
9. ④란의 특정 등급을 선택할 시, 신청하려는 등급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경력 등 조회	→	검토	→	증명서 발급
신청인		건설근로자공제회		관련 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